

제263회 임시회
2007. 9. 12(수)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일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자 : 이종호 의원 외 6인

(이종호, 이필용, 김환동, 박재국, 연만흠, 강태원, 조영재)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3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3. 제안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3.24)」과 「지방자치법(2007.5.1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의 문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및 조문의 정비(안 제1조)

(1)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3.24 개정)

(2)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126조(2007.5.11 개정)

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0조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 및 공고를 하지 않을 시 부과하던 과태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및 제6조).

다.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안 제3조).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음.

개정내용 중 특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된 것은 많은 도민이 인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